제 17 장 기기선정위원회

신설 2011년 3월 29일

제44조 (설치와 구성) 의과대학은 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기선정위원회를 둔다.

1. 위원장은 연구 및 기금 부학장으로 한다.
2. 당연직 위원은 의학과장, 의예과장, 의과학연구소 소장으로 하며 그 임기는 해당 보직 기간으로 한다.
3. 선출직 위원은 의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45조 (기능) 기기선정위원회는 연구 및 실습을 위한 장비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의과대학 연구 및 실습 장비 선정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타 의과대학 연구 및 실습 장비 선정에 관한 사항